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1. 29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11. 16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1. 11. 17.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(2021. 11. 29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과장

### 가. 제안이유

여성의 권익증진과 다양한 성별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마포구 여성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 관리·감독에 대한 사항 등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안 제47조~제48조 신설
  - 여성센터의 운영을 위한 설치 목적 및 역할 등을 명시
- 안 제49조~제50조 신설
  -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 운영자의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

### 3. 검토보고 (박춘주 전문위원)

- 본 조례개정안은 『양성평등기본법』 제45조 및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』 제31조에 근거하여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,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마포구 여성센터의 설치·운영과 위탁관리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
- 개정조례안 내용들을 살펴보면
  - 조문 제47조와 제48조를 신설하여 마포구 여성센터 설치·운영에 대해 규정하고,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에서 수행할 역할들을 열거하고 있으며
  - 조문 제49조는 여성센터 위탁과 위탁기간(3년) 및 수탁운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50조에는 위탁기관 관리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이며 신설되는 조문들은 상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한 적합한 개정이라 사료됨
-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마포구 여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는 별첨 비용추계서와 같이 재정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여성센터의 설치·운영으로 우리 구 여성 권익증진과 다양한 성별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센터 운영에 각별한 관심으로 가져야 할 것임.

#### ※ 참고자료

1. 관련 법규
2. 비용추계서

## [관련법규]

### 양성평등 기본법

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8099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

- 제45조(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 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#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

[시행 2020. 4. 24.] [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300호, 2020. 4. 24., 일부개정]

- 제31조(여성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)**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,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5.9.24>

## [비용추계서]

#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# 1. 비용추계 요약

가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1)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장 센터설치 및 운영

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31조(여성시설의 설치·운영)

나. 구청장방침 現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한 여성센터 설치 운영계획(안)

다. 비용추계기간 : 2021. 1. ~ 2025. 12. (60개월)

#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(2021년)	(2022년)	(2023년)	(2024년)	(2025년이후 계속)	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시비 보조금	-	-	-	-	-	-
	구비 보조금	43,600	1,706,700	330,890	335,853	340,890	2,757,933
	소계(b)	43,600	1,706,700	330,890	335,853	340,890	2,757,933
□ 총 비용(a-b)		43,600	1,706,700	330,890	335,853	340,890	2,757,933

※ 인건비 상승분(연도별 소요예산의 1.5%) 반영

※ 2022년도 여성센터 설치 리모델링 공사비 1,380,700천원 포함

#### 4. 재원조달 방안

가. 마포구 구비 전액 지원

#### 5. 덧붙이는 의견

가.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6. 작성자 :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김미진 (☎ 3153-8922)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: 없음